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48호 2022. 2. 7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예천군 조례 제2494호)

공 고

-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2-231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2월 7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94호

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
·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성민원”이란 민원인의 폭언·폭행·성희롱·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, 협박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.
2. “민원응대 공무원 등”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

을 이용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공무원

나. 청원경찰

다. 공무원직근로자

라. 기간제근로자

3. “안전시설”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·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신고의무)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,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부서장

의 지휘 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항)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
2. 심리상담
3.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시간·공간
4.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소송절차 및 방어비용의 지원
5.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
6. 일시적 업무변경 및 직원보호 특별휴가. 다만, 특별휴가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일부터 익일 이내로 정한다.
7.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)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.

1.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호 장비 도입

2.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

3. 자동녹음 전화 설치(착신 전 폭언·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)

4.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

5. 기타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

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.

1. 각 민원실에 폭언·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

2.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·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시

3. 기타 군수가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제9조(지원 방법) ① 군수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

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.

제10조(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) 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.

제11조(지원 결정)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.

제12조(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지원 방안 결정
2.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
3.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이 제안한 사항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

또는 임명한다.

1. 후생복지팀장, 총무팀장, 행정팀장, 예산팀장
2.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

제1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임명한다.

⑥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

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제정이유

민원인의 폭언,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신속히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심신의 안정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대상자를 정함(제2조)

-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공무원, 청원 경찰, 공무원직근로자, 기간제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나.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사항에 대해 정함(제7조 ~ 제8조)

- 악성민원 대응 정책 마련, 심리상담,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예방·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음
-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도입,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, 자동 녹음 전화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다. 지원방법, 지원결정 사항 등에 대해 정함(제9조 ~ 제11조)

- 전문심리상담사 활용, 전문 기관 등에 교육 및 연수 위탁 운영, 공무원 보호 정책 마련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음

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정함(제12조 ~ 제16조)

- 민원응대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음

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
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2년 2월 7일

예 천 군 수

1. 모집대상

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공고일 기준
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·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
단,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

2. 모집기간 : 2022. 02. 07 ~ 2022. 03. 31. 18:00까지

3. 지원금액 :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별 총 사업비의 일부 지원

※ 예산액 : 금150,000,000원(금일억오천만원)

4. 지원대상
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·보수
- 상·하수도시설의 유지·보수(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)
-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, 석축, 절개지 등의 보수
- 가로등, 보안등의 유지·보수
-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차단기의 보수·설치
-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·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·개선
-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,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·보수
- 어린이놀이시설,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, 공동 화장실의 보수
-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(크린넷)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·개선 등 유지관리비
-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(App)구축 운영
-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

5. 지원결정

- 예천군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보조대상 및 지원기준의 심의·결정
- 공동주택의 노후 년수 및 입주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음

6. 접 수 처 :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(☎054.650.6352)

7. 제출서류

- 가.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
- 나.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(단,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)
- 다. 사업계획서(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, 시공도면 포함)
- 라.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
- 마. 공법 및 공정표
- 바.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

8. 안내사항

제출서류는 아래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고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(☎054.650.635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

신청자	공동주택명		동 수	
	주 소		세대수	
	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		준공일	

신 청 내 용

사업명	소요예산			사 업 내 용	비 고
	계	보조금액 (신청액)	자 체 부담액		
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관리주체

(인)

예천군수 귀하

[구비서류]

1.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(단,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) 1부.
2. 사업계획서(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, 시공도면 포함) 1부.
3.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.
4. 공법 및 공정표 1부.
5.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(한글파일의 사진대지)

【전본】

사 업 계 획 서

1. 단지현황

- 아파트명 : ○○아파트
- 위 치 : 예천군 읍·면 (도로명주소기입)
- 단지현황 : 동 세대
- 준공일자 : 19 . . .

2. 사 업 명 :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

(○○아파트 ○○시설 보수공사)

3. 사업목적

- ○○○○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○○시설이 노후 및 파손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회 ○○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.

4. 소요예산

(단위 : 원)

구 분 공 종	합 계	보조금(00%)	자부담(00%)	비 고
				부과세 포함

5. 사업기간 : 20 . ~ 20 . (00일간)

붙임 : 내역서, 시공도면, 예금통장사본, 현황사진 등

【전본】

000아파트 입주자 동의서

경상북도(예천군)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2021. . .

1. 대표자 선정에 대한 동의

- 대 표 자 :
- 생년월일 : 19 . 00. 00.
- 주 소 : 경상북도 예천군 000아파트 동 호
- 연 락 처 : 010-

2. 관리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동의

- 000아파트 00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의 00%를 지원 받고
우리 아파트에서 00%를 부담하여 보수함

세대수	1. 대표자 선정 동의결과			2. 관리비용 지원신청 동의결과		
	찬성	반대	동의율	찬성	반대	동의율
세대						

동(세대)							
호수	성명	생년월일	세대주와 의 관계	1. 대표자 선정		2. 관리비용 지원신청	
				찬성	반대	찬성	반대
				(서명/인)	(서명/인)	(서명/인)	(서명/인)

【전본】

예정공사비 견적서

※ 주의: 2개 업체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을 첨부하여야 함(부가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)

【전본】

보수대상 현황사진

○○아파트 전경사진

○○시설 노후 사진

【전본】

예정공정표

공 사 명	
공 법	
공 사 비	

공 종	전체기간								
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토공									
기초공사									